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22호 2017. 7. 5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고시 제2017-104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.....2
- 정선군고시 제2017-105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.....4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 2017-681호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 주민참여단」 모집 재공고.....6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고시 제2017-104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녹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
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6월 30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정선읍 봉양리 봉양제 일원에 정선시가지와 공설운동장 간 차량 및 주민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공설운동장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고 아리랑제 등 군 행사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계획 도로(소로3-53호선) 신설 및 소로2-19호선 가각부분과 완충녹지 일부변경하는 사항임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1-1번지 일원

다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- 1)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규 모			폭원 (m)	연장 (m)	기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							
기정	소로	2	19	8	250	국지 도로	중로2-2, 정선읍 봉양리 337-1대	소로2-35, 정선읍 봉양리 139-2제	일반 도로	농촌 지도소	강고134호 (85.12.14)
변경	소로	2	19	8	250	국지 도로	중로2-2, 정선읍 봉양리 337-1대	소로2-35, 정선읍 봉양리 139-2제	일반 도로	종합사회 복지관	강고134호 (85.12.14)
신설	소로	3	53	6	14	국지 도로	소로2-19, 정선읍 봉양리 139-2제	소로1-20, 정선읍 봉양리 361-1제	일반 도로	-	-

○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19	소로2-19	• 종점부 가각 변경	• 소로3-53호선 신설에 따른 종점부 가각 변경
-	소로 3-53	• 도로 신설(중복결정) : B=6m, L=14m	• 차량 및 주민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공설운동장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고 아리랑제 등 군 행사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(도로) 신설

2) 녹지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①	봉양리 제방변1 완충녹지	완충녹지	정선읍 봉양리 138-2 일원	7,560	증) 17	7,577	강고 제194호 (76.12.7)	-

○ 녹지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①	봉양리 제방변1 완충녹지	• 면적증가 : A=7,560m ² → 7,577m ² 증) 17m ²	• 소로2-19호선 종점부 가각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일부 증가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녹지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(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)

정선군고시 제2017-105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 하고,
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6월 30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기 조성된 풋살장 철거로 여량리 119지구대 옆 기 조성 되어 있는 체육시설 및 신규 풋살장을 금회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확충 및 체력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90-1번지 일원

다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○ 체육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①	여량 생활체육시설	체육 시설	여량면 여량리 390-1번지 일원	-	증)8,288	8,288	금회	

○ 체육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여량 생활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량 체육시설 신설 - A=8,288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확충, 삶의 질 향상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금회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함.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(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 2017-681호

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 「주민참여단」 모집 재공고

정선군의 20년 후 미래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「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」에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수립코자 주민참여단을 재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자격요건

만18세 이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시·주택·교통·산업·환경·안전·문화·복지·관광 등에 전문적인 자격이나 관심이 있는 모든 군민 (정선군 관내 사업장 근무자 및 고등학생, 대학생 포함)

※ 무보수 명예 주민참여단

□ 모집인원 : 총 30명

□ 접수방법 및 접수처

• 접수방법 : 방문(정선군청 도시건축과, 읍·면사무소), 우편·팩스접수(도시건축과)

• 접 수 처 : 정선군 도시건축과, 각 읍·면사무소(방문 신청시)

※ 우편: (26131)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도시건축과, 팩스: 033-560-2593

• 신 청 서 : 정선군 홈페이지 또는 읍·면사무소 비치

□ 접수기간 : 2017. 7. 03. ~ 7. 13.(10일간)

□ 선정방법 : 신청자 중 자체심사(대표성, 계층의 다양성 등) 하여 선정

□ 결과발표 : 2017년 7월중 개별통지 및 군청 홈페이지 공고

□ 회의일정 : 2017년 7월 ~ 9월 (총 3회, 필요시 조정가능)

※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(033-560-213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7. 03.

정 선 군 수